

[ ] 가축 사육제한  
[ ]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|----|----|
|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가축사육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장명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소유자<br>(관리자)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가축<br>사육<br>제한<br>명령<br>[ ]       | 내용         |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사육 규모          |     |    | 이행기간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<br>가축   | 축종             | 품종  | 성별 | 연령   | 특징 | 비고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가축<br>사육<br>시설<br>폐쇄<br>명령<br>[ ] | 내용 및<br>대상 |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이유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농장명            | 소재지 |    |      |    |    |
|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|    |    |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4제5항, 제19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[ ]가축 사육제한을 [ ]가축사육시설 폐쇄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명령 또는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